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3가단51313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

담당변호사 이준석, 김준동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9. 12.

판결 선고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4,440,530원 및 그 중 45,113,157원에 대해서는 2022. 8. 12.부터, 29,327,204원에 대해서는 2022. 8. 26.부터 각 2023. 6. 15.까지는 연 7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(피고 B에 대하여는
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).
2.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홍도

별지